●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급여는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 ● 총급여액의 5/100와 퇴직급여추계액의 0/100에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 한도액이 됨. ● 한도초과액 129,300,000은 손금불산입